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
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(법률 제18236호, 2021. 6. 8. 공포, 2021. 12. 9. 시행)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맞게 본 시행령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(안 제54조의2)

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·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 사항을 규정함

나. 권한 위임 사항 정비(안 제66조제1항제38호의2 및 제46호)

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권한 위임 사항(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권,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) 역시 정비하는 것임

다.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(안 제67조 및 별표 3)

법 제8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의2(제54조의2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2 국·공유 재산 처분 관련 보고

제54조의2(국·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) 법 제65조의2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1.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
2.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
3.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(이하 “매입재산”이라 한다)의 처분 후 사용용도
4. 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
5. 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

제66조제1항에 제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6호 중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(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”로 한다.

38의2.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 요구(지방보훈청장,

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

제67조 중 “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가.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
다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1항	1천만원
나.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 우	법 제83조 제3항제1호	300만원
다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로 신고한 경우	법 제83조 제3항제2호	300만원
라.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83조 제3항제3호	300만원
마.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83조 제3항제4호	300만원
바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	법 제83조	500만원

사업을 한 경우	제2항 제1호	
사.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 제2호	500만원
아.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83조 제2항 제3호	500만원
자. 법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83조 제2항 제4호	500만원
차. 법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83조 제2항 제5호	500만원
카.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83조 제2항 제6호	500만원
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83조 제3항 제5호	300만원
파. 법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83조 제2항 제7호	500만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장의2 국 · 공유 재산 처분</u> <u>관련 보고</u>
<u><신 설></u>	<u>제54조의2(국 · 공유 재산의 우선</u> <u>매각 등) 법 제65조의2제4항에</u> <u>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</u> <u>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</u> <u>말한다.</u> 1. <u>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</u> 2. <u>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</u> <u>위 및 이유</u> 3. <u>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</u> <u>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</u> <u>산(이하 “매입재산”이라 한다)</u> <u>의 처분 후 사용용도</u> 4. <u>매입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</u> <u>적 분쟁</u> 5. <u>매입재산의 현황 및 상태</u>
제66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) ① 국 가보훈처장은 법 제8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(제13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7호 및 제20호 는 제외한다)의 사항에 관한 권 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 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	제66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u>부과·징수</u> ② (생략) 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</u>	<u>부과·징수(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)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<u>법 제 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-----</u> --.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처 보훈단체협력담당관	
연 락 처	(044) 202 - 5493